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전통주 등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방법(안 제1조의2)

- 1) (제·개정 주요내용)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정함
- 2) (제·개정 사유)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개정안, 별첨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연 락 처	(044) 201 - 2136